

## 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4조)

신고 서식에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 단, 부정 신고, 관련 직무자 등은 제외

## 다. 포상금 지급방법(안 제5조)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지급. 단,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확정 전 지급 가능 등

##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케어콘(이진용) ②(주)부루빌(장수경)

③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⑤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차윤호)

나. 전화번호 : ①02-477-6849 ②031-261-3920 ③02-2122-6795 ④02-6333-3249 ⑤031-740-26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2호

3. 명칭 :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에 에폭시

함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재단한 이후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강 부위의 표면이 적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이다.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제조하고, 롤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는 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3.02.28. ~ 2021.02.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0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제정,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제외범위 등 (제3조)

- 1)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주된 사업(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제조·운수·건설·광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 2) 주된 사업은 직전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3)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개월 60시간 미만근로자